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398

발의연월일: 2022. 4. 26.

발 의 자: 김철민·고영인·김민철

도종환 • 박성준 • 서삼석

오영화 · 유동수 · 유준병

윤후덕 • 이병훈 • 이정문

최기상 • 한준호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주는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,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장기화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정 등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 간 상호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(안 제46조).
- 나.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58조제4항).
- 다.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58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4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 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5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	제46조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
면)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	면) ①
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(이하	
이 조에서 "기업부설연구소"라	
한다)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	
취득하는 부동산(부속토지는	
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	
것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	
서 같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의	
100분의 35[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	
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	
설연구소(이하 이 조에서 "신	
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	
부설연구소"라 한다)의 경우에	
는 100분의 45]를, 과세기준일	
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	
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	
재산세의 100분의 35(신성장동	
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	
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)	
를 각각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5년 12월 31일</u>
경감한다.	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독점
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
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
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「수도
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제1항제1
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
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
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
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
00분의 35(신성장동력·원천기술
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
는 100분의 45)를, 과세기준일
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
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
재산세의 100분의 35(신성장동
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
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)
를 각각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
경감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조세 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 호가목2)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(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

②
<u>2025년 12월 31일</u>
③

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 분의 60)을,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(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)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중소 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 른 중소기업(이하 이 장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이 기업부 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(신 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 의 70)을, 과세기준일 현재 기 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(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 는 100분의 60)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⑤ (생 략)

2025년 12월 31일
<b>4</b>
<u>2025년</u>
12월 31일
⑤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	제58조(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
특례) ① ~ ③ (생 략)	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	4
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에	
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	
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	
다.	
1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	1
조치법」 제18조의4에 따른	
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	
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	
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	
서는 취득세의 1,000분의 375	
를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경	<u>202</u> 5년 12월 31일
감한다.	<u>.</u>
2.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	2
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	
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	
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	
1,000분의 375를 <u>2022년 12월</u>	2025년 12
<u>31일</u> 까지 경감한다.	월 31일
제58조의2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	제58조의2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
한 감면) ① 「산업집적활성화	한 감면) ①
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	
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	
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	
	I .

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 지방 세를 경감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.
- 1.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 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2.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 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

가.・나. (생 략)

<u>2025년 12월 31일</u>
1. <u>2025년 12월 31일</u>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2

대해서는 재산세의 1,000분의	
375를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</u> 5년 12월 31일-
경감한다.	